

---

# 농·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

---

2026. 5. 29.

관계부처합동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지원단가 한도 상향 방안 .....	2
III. 향후 계획 .....	2

## I. 추진 배경

❖ 「화물자동차법」·「여객자동차법」 개정으로 화물차·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 상향(52.8%) 예정

⇒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단가 한도 상향(추경 정부안 대비 52.8%) 추진

□ 중동 전쟁 발생 이후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 지속 상승

< 중동 전쟁 이후 유가 동향(5.26일 기준) >

▶ (국제유가) <sup>현물</sup>두바이유 981\$/배럴(전쟁 전 대비 37.8%↑), <sup>선물</sup>브렌트유 996(37.3%↑), <sup>선물</sup>WTI유 939(40.1%↑)

▶ (과세유) 경유 2,006원/ℓ(전쟁 전(2.27.) 대비 25.6%↑), 등유 1,630(24.0%↑), 휘발유 2,011(18.7%↑)

▶ (면세유) 경유 1,512원/ℓ(전쟁 전(2.27.) 대비 34.7%↑), 등유 1,424(27.7%↑), 휘발유 1,308(28.0%↑)

□ 이에 농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,188억원\* 반영

\* (농업용) 623억 원(농기계용 경유 529, 원예시설 난방유 94) / (어업용) 562(어업용 경유) / (임업용) 3(임업기계용 경유)

○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,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기준가격 대비 지원비율(15.4%) 및 보조율(70%)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경 정부안 편성

\* 경유: (화물차·여객차) 기준가격 1,700원/ℓ, 지원단가 한도 183.2원(기준가격 대비 15.4%×70%)  
(농림어업용 면세유 정부안) 기준가격 1,070원/ℓ, 지원단가 한도 115.3원(기준가격 대비 15.4%×70%)

○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단가 한도를 정부안 대비 20% 상향\*하여 추경예산 확정(4.10일)

\* 농림어업용 면세경유: (정부안) 115.3원/ℓ → (국회 확정) 138.4(정부안 대비 20%↑)

□ 이후 유가 지속 상승으로 화물·여객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한도 외 추가 지원 근거 마련

○ 「화물자동차법」·「여객자동차법」 개정으로 국가 자원안보 위기\* 시 기존 지원단가 한도(183.2원/ℓ)외 추가 지원 근거 신설(5.29일 공포)

\* 산업통상부 장관이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(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)를 발령하는 경우

↳ 석유 자원안보 경보단계 격상(주의 → 경계, '26.4.2).

○ 국토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6월 초에 기존 대비 지원단가 한도 52.8% 상향을 골자로 관련 고시\*를 개정하여 5월 29일부터 소급 적용 예정

\* 「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관리규정」, 「여객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침」

## II. 지원단가 한도 상향 방안

-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, 화물차·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 인상률 52.8%\*를 농림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에 일괄 적용
    - \* 화물차·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(경유): 현행183.2원/ℓ → 한도 상향280원/ℓ (52.8%↑)
  - 단, 농림어업용의 경우 추경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20%가 既 상향됨에 따라, 현행 대비 27.3%(36~42원/ℓ) 인상
    - \* 예) 경유: 정부안115.3원/ℓ → 국회심의138.4원/ℓ (20%↑) → 한도 상향176.2원/ℓ (정부안 대비 52.8%↑)
- (단위 : 원/ℓ, 원/kg)

소관부처	지원 유종		기준 가격	지원단가 한도		
				현행 (기준 가격 대비 12.9%)	상향 (기준 가격 대비 16.4%)	현행 대비
농식품부	농기계용 (트랙터·경운기·콤바인)	경유	1,070	138.4	<b>176.2</b>	+37.8
		등유	1,112	143.9	<b>183.2</b>	+39.3
	원예시설 난방기용	중유	1,116	144.4	<b>183.8</b>	+39.4
		LPG	1,197	154.8	<b>197.1</b>	+42.3
		부생연료유 1호	1,015	131.3	<b>167.2</b>	+35.9
		부생연료유 2호	1,055	136.5	<b>173.8</b>	+37.3
해수부	어업용	경유	1,070	138.4	<b>176.2</b>	+37.8
산림청	임업기계용 (동력 상하차기 등 7종)	경유	1,070	138.4	<b>176.2</b>	+37.8

-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는 개정된 「화물자동차법」, 「여객자동차법」 공포일인 '26년 5월 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
- ※ 지원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 반영 예산(3~9월) 조기 소진 시 예비비 등 지원 검토(유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## III. 향후 계획

- 사업시행 지침 개정 시행('26.5.29)
- 관계부처 합동(기획처·농식품부·해수부·산림청) 보도자료 배포('26.5.29)
  - 사업시행기관(농협·수협·산림조합)을 통해 농림어업인에게 지원단가 한도 상향 내용 홍보